

# 現代 家族問題에 關한 研究

— 韓 · 日 間의 離婚 傾向에 關한 研究 —

A Comparative Study of Divorce between Korea and Japan

忠南大學校 家政教育科

助教授 金 惠 善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Hei Sun Kim

## <目 次>

I. 序 論

II. 本 論

1. 離婚에 關한 理論的 背景

2. 韓國과 日本의 離婚 傾向 比較

III. 結 論

## <Abstract>

The study was designed to compare family problems, specially divorce between Korea and Japan.

The age, married period, occupation, education and divorced reason of the couple are formed to be the major factor to relate to divorce in Korea and Japan.

Divorced couple both in Korea and Japan showed similla tendency in age, married period and occupation; couples with younger age, 5~10 years of married period, and sale and service occupation showed higher tendency in divorce.

However Japan established the civil law 25 years earlier than Korea and always showed higher tendency in divorce rate between the year of 1912 and 1976.

In Korea couples with middle and high school education showed higher tendency in divorce, but in Japan highly education couple showed lower tendency in divorce.

The major reason for divorce in Japan formed to be disagreed with personality and spouse's affair, but in Korea unchaste act was the most significant reason.

## I. 序 論

現代社會에서의 家族形態는 核家族化의 傾向이 짊으므로 家族 內의 相互作用이 밀접하고 強한 반면 相互期待의 어긋남에 대한 불만 등으로 夫婦間의 葛藤, 女性의 就業, 그리고 女性의 職業生活로

인한 子女의 教育問題, 核家族化에 따른 老人問題, 나아가서 老人福祉問題, 社會保障制度 등 여러가지 家族的 社會的 問題가 나타나게 된다.<sup>1)</sup>

이와같이 多樣한 現代家族問題들은 우리나라에서도 儒敎의 權威主義와 새로운 西歐思想인 個人主義나 自由主義 平等主義와 混合되어 히다하게 나타나고 있다.

1) 劉永珠, 家族關係學, 修學社, 1976, p. 292.

그 중에서도 離婚은 당사자 및 子女를 心理的으로 不安하게 하며 社會의 安定性을 위협하는 問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離婚問題는 現代의 家族問題中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社會體제가 다른 나라일지라도 婚姻이 存在하는 限 夫婦의 갈등은 항상 存在하며 이러한 갈등이 解消되지 않는 限 離婚 또한 영원히 存在하며 이것이 社會構造의 변천과 對應하여 增加하고 있음을 볼 때<sup>2)</sup> 離婚問題는 現代社會가 갖는 가장 심각한 問題라고 말할 수 있다.

더우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일본의 동경가정재판소 일본의 민간상담기관인 弘濟會에서의 상담사건 내용中 離婚에 대한 상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서도 離婚問題는 現代家族이 갖는 問題 가운데 中心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離婚問題에 대한 연구는 現代社會의 家族問題를 연구하는데 있어 가장 意義가 있는 것으로 思慮된다.

本 연구는 離婚制度에 대한 歷史的 社會的 考察을 하고, 離婚을 일으키는 要因 및 離婚이 야기시키는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문헌 연구를 하며, 우리나라와 日本의 실제적 통계자료를 통하여 離婚率 및 離婚과 관련된 要因 등 離婚의 傾向을 比較하고자 한다.

本 연구의 제한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離婚者 個個人의 離婚要因만을 調査하는데 그쳤을 뿐 종합적으로 통계처리되어 있지 않았으며, 裁判 離婚의 경우만 離婚事件 原因 및 기타 몇 가지 要因이 사법연감에 보고되고 있어 離婚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比較할 수 없었던 점이다.

## II. 本 論

### 1. 離婚에 關한 理論的 背景

#### (1) 離婚의 歷史的·社會的 考察

東·西洋을 막론하고 上古時代의 離婚習俗은 歷史的 記錄이 없어 未詳이다. 古代의 家父長的 社

會가 發生하면서부터 現在에 이르기까지의 離婚制度는 禁忌主義에서 制限主義, 그리고 自由主義로 변천하였다.

즉 古代의 家父長的 家族制度 下에서는 妻의 意思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남편의 一方의 意思에 의한 專權的 無因離婚이 一般的이었다.

中世 유럽에서는 기독교가 일어나자 人道主義的 立場에서 離婚非解消主義가 주장되어 男子 專權的 離婚制度에 대하여 강한 반대가 일어나 10世紀 경에는 유럽 全域에 걸쳐 離婚이 法律的으로 禁止되었다. 그러나 로마 教會에서도 절대적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 하여 別居를 認定함으로써 形式上 離婚을 피하게 하거나 離婚이 아직 成立하지 않은 동안의 離婚(未完成離婚)이라는 方法으로 離婚을 허용하였다.

그 후 16世紀의 宗教改革運動으로 離婚의 絕對 禁止에 대한 반대가 일어나면서 중대한 事由가 있을 경우에 限하여 國家의 承認을 얻으면 離婚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다가 近代法에 의하여 婦女의 地位가 向上되고 意思의 自由를 갖게 되므로써 비로소 協議 離婚이 認定되었다.<sup>3)</sup>

우리나라 離婚制度의 변모를 살펴보면 三國時代는 이미 母權이 후퇴하고 夫權이 擡頭된 時代이므로 점차 女性의 地位가 男性에게 歸屬됨에 따라 強大한 夫權에 의하여 妻를 용이하게 逐出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時代에는 당시의 習俗이었던 一夫多妻制로 인하여 구태여 棄妻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棄妻制限에 關한 法制가 確立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高麗時代에는 離婚의 制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法的 制限이 엄중하지 않았고 夫의 一方의 意思에 의한 강제적인 離婚이 行하여 진 것으로 추측한다.<sup>4)</sup>

朝鮮時代에는 儒敎的인 札敎의 報級에 따라 冠婚喪祭의 禮가 정비되어 大明律의 規定을 그 基本原理로 하였다. 즉 明律에 規定된 <七出三不去>制

2) 光川晴之·四方壽雄·大橋薫, 家族病理學, 有斐閣双書, 昭和 50年, p. 152.

3) 金容漢, 親族相續法, 博英社, 1973, p. 158~159.

4) 金斗憲, 朝鮮家族制度 研究, p. 590~592, 韓國文化史 大系, p. 460(재인용).

度로서 七出이란 7個(無子, 淫佚, 不事舅姑, 妬, 惡疾, 多言, 竊盜)의 棄妻原因으로 이에 해당하는 事由가 있을 때 限하여 離婚 내지 棄妻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事由가 있더라도 三不去(與共便三年喪, 先貧賤後富貴, 有所娶無所歸)에 해당되면 棄妻가 허용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이유없이 棄妻하는 者는 처벌하였다.<sup>5)</sup>

前述한 바와 같이 棄妻의 事由를 제한한 것을 보면 朝鮮時代에는 될 수 있는 대로 無因離婚을 방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1910年 韓·日合併과 더불어 西歐文明이 日本을 매개로 흡수되면서 女性은 男女同權을 주장하게 되었다.

裁判上の 離婚原因은 1923年 7월 1일부터 日本의 舊民法이 우리나라에 依用됨으로써 確定되었다. 이 때의 離婚規定은 봉건적 家族制度에 맞춘 것이기 때문에 男女 不平等했을 뿐 아니라 배우자의 一方이 婚姻 義務를 위반했을 경우에 限해서만 離婚을 인정하는 有責主義의인 規定이었다.

그러나 婚姻破綻은 당사자의 過失 뿐아니라 不治의 病이나 行方不明 등으로 인한 경우도 있으므로 抽象的인 離婚原因을 고려하게 되었다.<sup>6)</sup>

日本의 家族은 여러가지 思潮에 따라 달랐다. 즉 江戸時代(1603~1807)의 婚姻은 같은 身分사이로 限定되었다가 明治 4年(1871)에야 貴族과 平民間의 婚姻을 許容하였고, 貴族과 卑人의 婚姻은 許可制로 하였다. 思想的으로는 明治 10年代에 福澤이 계몽사상을 부르짖어 완전한 夫婦同權은 아니더라도 公的인 면에서라도 妻와 母의 地位를 강화하기 위하여 「男女同權」「一夫一妻制」「蓄妾廢止」「離婚同權」등 女子의 權利를 강력히 주장하였다.<sup>7)</sup>

이와같이 日本은 점차 봉건제도를 타파하고 親 西歐文明의 政策을 취하여 近代化의 場을 열므로써 家族法에 있어서도 明治 31年(1898) 民法制定

에 의하여 近代의 家族法이 形成되었으나 家父長의 家族의 慣習은 最近까지도 殘存하고 있다.<sup>8)</sup>

이상을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三國時代 高麗時代에서는 棄妻制限에 대한 法制가 確立되지 않았으므로 夫의 權限에 의한 強制離婚이 가능하였다.

朝鮮時代에는 大明律을 基本原理로 法制가 規定되어 無因離婚을 방지하였으나 兩班家의 蓄妾制度는 여전히 있었다.

그 뒤 1910년대에 이미 「男女同權」「一夫一妻制」「蓄妾廢止」「離婚同權」 등이 주장된 점 뿐 아니라 家族法을 포함한 民法制定의 時期면에서도 日本은 우리나라보다 약 25年 앞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日本을 西洋과 比較해 볼 때 夫의 專權離婚이던 것이 法律的으로 規定되다가 後에 法律上 承認된 過程은 同一하지만 時代的으로는 약 3~4세기 늦게 發展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다.

## (2) 離婚에 영향을 주는 要因 分析

離婚이란 夫婦의 生存 中에서의 婚姻解消를 말한다. 夫婦關係를 人爲的으로 消滅시키는 점에서 夫婦 一方의 死亡에 의한 婚姻의 自然的 解消와는 다르다.

離婚에 영향을 주는 要因으로는 價値觀의 變化를 들 수 있다. 社會의 近代化로 個人主義·自由主義 등의 보급으로 從來의 婚姻觀·家族觀·道德觀 등 價値觀의 變化도 個人的 愛情과 幸福을 중요시하는 傾向이 짙어지고 있다. 즉 夫婦의 愛情이 식어지면 언제든지 離婚한다는 觀念을 갖게 되었으며<sup>9)</sup> 더욱이 離婚은 비극이나 惡이 아니라 破綻에 이른 婚姻生活을 청산하고 새로운 生活을 시작하는 것으로서 個人的으로나 社會的 道德的으로 비난될 수 단은 없다는 價値觀으로 變化하고 있다.

女性이 經濟的으로 自立할, 能力이 생김에 따라 남편에 대한 屈從을 거부하고 人格的 主體로서의 地位를 要求하게 되었다. 이는 남편의 家父長的

5) 金晴洙, 家族關係學, 遼明文化社, 1975, p. 74.

6) 金晴洙, 前掲書, 1975, p. 76~77.

7) 湯澤雍彦, 新版 家族關係學, 光生館, 昭和 54年, p. 168.

8) 光川晴之·四方壽雄·大橋薫, 前掲書, p. 148.

9) 光川晴之·四方壽雄·大橋薫, 前掲書, p. 150.

10) 湯澤雍彦, 前掲書, 昭和 54年, p. 160.

〈표 1〉

年齡階級別 妻의 職業有無

		職業有無	總數 (20~44歲)	20~24歲	25~29歲	30~34歲	35~39歲	40~44歲
離婚	總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有		52.3	46.4	48.0	48.9	58.3	71.4
	無		45.8	51.0	58.8	49.3	39.2	26.1
	不詳		1.9	2.6	1.3	1.8	2.5	2.5
*勞動力調查	總數		100.0%	100.0	100.0	100.0	100.0	
	有		47.6	41.1	35.4	42.9	54.2	60.3
	無		51.6	57.9	63.8	56.4	45.1	39.9
	不詳		0.8	1.1	0.8	0.7	0.7	0.8

\* 昭和 53年「勞動力調查年報」(總理府統計局)

權威를 전락시키고 家庭의 傳統的 秩序를 파괴하여 부당한 婚姻에 대해 解消할 것을 단행할 수 있게 하였다.<sup>10)</sup>

뿐만 아니라 남편은 妻에 대해 傳統的 役割을 期待하지만 女性의 職業활동은 妻로서의 役割 修行에 지장을 주므로 夫婦 間에 葛藤을 일으키게 한다.

그러나 Nye는 職業女性의 結婚生活이 非職業女性에 비하여 葛藤이 더 많음은 인정했으나 職場의 만족감으로 남편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葛藤과 結婚生活의 만족도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sup>11)</sup>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離婚한 女性과 총인구의 有配偶 女性의 職業을 비교하여 보면 離婚한 女性의 경우 職業을 가진 비율이 각 연령층 모두 총인구의 有配偶 女性보다 높음을 발견할 수 있다.

더우기 結婚·出産 연령인 25~29세의 경우 노동력 조사에서는 職業을 가진 비율이 일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반하여 離婚한 女性에게 연령이 높아질수록 職業을 많이 가지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勞働人口의 都市集中과 農村의 過小化現象 등 社會의 現代化 傾向이 급속히 進展하여 社會構造는 前近代의·近代의·現代的의 세가지 文化樣式

이 共存하는 혼돈을 이루었다. 그 結果 家族도 社會構造의 영향을 받아서 形態上 傳統的인 家族로부터 夫婦中心의 核家族으로 移行되었으며 그 機能도 축소 또는 변화되었다. 이렇게 家族의 形態가 小家族化됨에 따라 離婚에 대해 주위사람의 영향이 적어졌으며 中裁者가 없게 되었다.<sup>12)</sup> 왜냐 하던 核家族에서는 친척 間의 접촉이 감소되고 혈연관계에 따르는 道義的 義務와 權利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東京 가정재판소의 상담 내용 中には 자기 자신의 問題가 아닌 親族이나 他人의 일인 경우가 과거 보다 현저하게 줄고 있는 사실<sup>13)</sup>로 미루어 보더라도 大都市 家族의 고립화 또는 結合이 弱化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高等教育으로 인한 女性의 社會的 地位向上으로 家庭에서의 남편의 절대적 권위가 점차 감소하게 되었다. 離婚問題로 상담을 의뢰한 相談者 中には 남편이 24.1%, 妻가 75.9%로 妻가 훨씬 상담을 많이 하고 있음이 발견되었으며<sup>14)</sup> 日本에서의 離婚提起 分布를 보면 [그림 1]과 같다.

남편이 35.2%, 妻가 55.3%로 妻의 경우가 훨씬 많은데 이것을 昭和 43년과 비교하면 妻의 제기율이 5% 정도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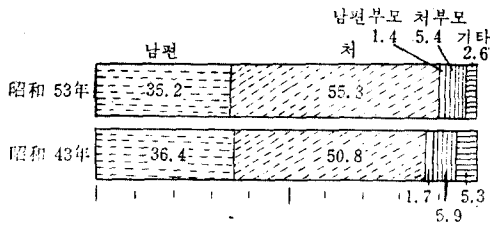
위 사실에서 兩國을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妻가 日本의 妻보다 夫婦 間의 問題를 많이 가지

11) F. Ivan Nye, "Mantal Interaction in Nye and Hoffman", The Employed Mother in America, Chicago: Rand McNally, 1966, p. 272~275.

12) 光川晴之·四方壽雄·大橋薫, 前掲書, p. 149~150.

13) 光川晴之·四方壽雄·大橋薫, 前掲書, p. 207.

14) 상담사건통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980, p. 13.



※ 昭和 53年, 「協議離婚의 實態」(厚生省)  
 [그림 1] 離婚提起 分布

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 妻의 경우 家庭生活에서 자신의 權利를 주장하고자 하는 意識이 높아가고 있으나 남편측은 아직도 일본의 남편보다 보수적인 觀念이 강하기 때문에 思慮된다.

또한 위 사실은 Gunter의 結婚生活의 충돌에서 離婚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女性이라는 研究와 일치하고 있었다.<sup>15)</sup>

貧困 및 經濟的 恐慌 또는 景氣의 후퇴등으로 家庭經濟에 심각한 變化가 왔을 때 經濟的 要因은 離婚의 主된 原因이 된다.

戰爭으로 夫婦 中 한 사람이 死亡 또는 行方不明으로 長期間 不在 中일 경우를 들 수 있다.

夫婦 中 한 사람이 禁治産 宣告, 限定治産 宣告, 實刑의 宣告 등으로 法的地位가 變化했을 때 夫婦關係를 위협한다.

그밖에 個人이 갖는 離婚 이유로서는 結婚 前에 상대방에 대해 충분한 判찰을 하지 못하여 結果적으로 정확히 認識하지 못 한 점이다. 상당한 期間 동안 교제를 하더라도 皮상적인 交제에만 그쳐 진정한 人格을 파악하지 못한 채 結婚에 임한다면 男女 모두 結婚에 과도한 期待를 갖게되고 結果적으로 빠른 離婚이 發生한다고 Duvall은 말하였다.<sup>16)</sup> 이런 夫婦들은 당초 자신의 認識不足과 努力不足은 생각지 않고 相對的 態度가 變化하였다는 점으로 不和의 原因을 찾으려 하는 傾向이 있다.

이상 離婚의 主된 原因을 종합 분류하면 現代

化過程이 離婚에 영향을 주는 要因으로 價値觀의 變化, 女性의 經濟的 自立, 家族形態의 核家族化, 女性의 地位向上을 들었고,

時代的 變化를 불문한 要因으로는 갑작스런 經濟的 變化, 戰爭, 배우자의 法的 地位 變化를 들었는데 戰爭과 배우자의 法的 地位의 變化 要因은 離婚 서류 상에 직접적으로 効力を 發生하므로 離婚 착수에 명백한 이유가 되고 있다.

그밖에 個人이 갖는 要因으로는 結婚 前에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認識 결여를 들 수 있다.

### (3) 離婚의 結果

離婚은 한 家族을 붕괴시켜 家族關係 전반에 變化를 가져다 준다. 이것은 結婚生活의 긴장에서 도피할 수 있는 한 수단으로서 거의 모든 社會에서 허용되고 있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킨다. 즉 結婚後 당사자의 愛情的·情緒的 問題, 社會的·經濟的 問題, 子女의 養育및 그들의 情緒的 問題, 기타 社會에 파생되는 問題 등 저해요인을 들 수 있다.

#### ① 離婚夫婦에게 미치는 영향

離婚은 夫婦의 生活에 再適應을 要한다.

즉 離婚은 愛情的·情緒的 適應과 관련된다.

結婚生活中에는 葛藤·分爭으로 인하여 스스로 원해서 合意離婚을 했다고 해도 離婚後에는 장래에 대한 불안감 등이 따르게 된다.

더우기 子女가 많을수록, 당사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同居期間이 길수록 정서적 충격은 크다.<sup>17)</sup>

離婚은 社會的·經濟的 適應과 관련된다.

離婚은 지금까지의 社會關係·友人關係에 영향을 준다. 즉 配偶者의 親知와 유대가 끊어짐은 물론 자신의 친척이나 친구들과의 關係는 結婚의 실패로 어색해지므로 離婚前과 같이 유지하기가 어려우며, 더우기 社會의 부정적 觀念은 그들의 직장생활등 社會 適應에까지 영향을 준다.<sup>18)</sup>

한편 새로운 배우자를 만날 경우에는 친구들도

15) B.G. Gunter, "Notes on Divorce Family as Role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Feb. 1977, p. 95~98.  
 16) Chester, Robert, "Sex Difference in Divorce Behavior", *Journal of Biosocial Science* 2(Appendix), p. 121~128.  
 Chester, Robert and Jane Streater, "Society at work; Taking Stock of Divorce", *New Society* 18(July); p. 153~154.  
 17) Robert C. Williamson, *Marriage and Family Relationship*, Wiley, p. 551.  
 18) Robert C. Williamson, *op. cit.*, p. 551.

새로와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離婚後 女性の 職業이 없는 경우 女性이나 子女에게 經濟的 負擔이 따른다.

日本 厚生省의 조사에 의하면 離婚後 女性의 生活費의 出處는 <표 2>와 같다.

<표 2> 離婚後 妻의 生活費 出處

총 수	자신의 소득	부 형제 보조	모 친 보조	전남편 연금	생활 보호 대상 자 로서 보조	대 기 타
100%	56.4	25.4	2.7	1.0	7.8	6.6

※ 昭和 53年 「協議離婚의 實態」 (厚生省)

자신의 수입으로 生活하는 경우가 56.4%이고, 나머지는 他의 보조로서 父母나 兄弟의 보조가 25.4%, 生活保護者로서의 公的補助가 7.8%, 前 남편의 遺贈으로 인한 보조가 2.7%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다.

### ② 子女에게 미치는 영향

離婚으로 인한 缺損家庭의 한쪽 父母가 形式的인 義務를 수행하더라도 兩父母의 役割을 다하기에는 이해와 능력이 부족하고 결과적으로 의사 소통이 원활치 못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어느 한 쪽 父母만의 保護를 받는다는 점으로서도 정상적인 家庭의 子女보다 社會化 過程에 많은 지장을 받는다.<sup>19)</sup>

일반적으로 父母의 離婚에 의해 家族의 連帶感이 파괴되었을 때 子女들의 感情的·情緒的 安定은 타격을 받게 된다. 따라서 離婚家庭의 子女들은 家庭·學校·社會 및 異性問題에 까지 不適應 傾向을 보여준다.

어머니가 養育者일 경우에는 形式上 子女를 養育하는데 그칠 뿐 그 외 親權의 內容에서 어머니는 親權者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行事하게 되는 問題가 생긴다.<sup>20)</sup>

이런 때 子女들은 불만 및 열등의식 같은 異常心理를 갖게 되며, 이는 家族問題나 社會問題로 까지 派生시킬 수 있다.

### ③ 社會에 미치는 영향

정상적인 家庭에서 자란 아이들은 대체로 心理的으로는 만족스럽게 成長하는데 반해 缺損家庭의 子女들은 情緒的 不安感으로 인하여 그렇치 못 할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Morris Rosenberg의 研究에 따르면 離婚·別居家庭 子女의 대부분은 自我概念이 낮다고 한다. 이런 要素는 정서장애·긴장·갈등을 낳으며, 나아가 非社會的 行動 즉, 非行·犯罪 등의 問題行動의 原因이 되기도 한다.<sup>21)</sup>

그러나 缺損家庭이 少年범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관하여는 많은 연구와 보고가 있으나 國內外 학자들의 意見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Glueck<sup>22)</sup> 金箕斗교수<sup>23)</sup> 日本의 古益교수<sup>24)</sup>는 어릴 때의 缺損 家庭이 少年犯罪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으나 Shaw<sup>25)</sup> Sutherland<sup>26)</sup> 南興祐교수<sup>27)</sup>는 缺損家庭이 少年犯罪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고 하였다.<sup>28)</sup>

Glueck은 缺損家庭中 離婚家庭과 관련지어 볼 때 少年犯罪은 정상가정 보다 離婚家庭에서 많았으며<sup>29)</sup>, 父母의 社會階級이 같을 경우라면 비행율은 離婚이나 死亡에 의한 缺損家庭 보다 別居로 인한 缺損家庭에서 많다고 하였다.<sup>30)</sup>

19) William J. Goode, *The Family*, Prentice-Hall, The Dorsey Press, 1975, p.101.

20) 金崎洙, 前掲書, p. 178.

21) Morris Rosenberg, "The Broken Family and self-Esteem", Reiss, *Readings on the Family System*,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65, p. 174.

22) Sheldon and Eleanor Glueck, *Unraveling Juvenile Delinquency*, 1950, p. 110~121.

23) 金箕斗, 韓國 少年犯罪研究, 1970, p. 97~100

24) 金聖培, 刑事政策學, 1974, p. 99~100.

25) Shaw and Machay, *Social Factors in Juvenile Delinquency*, p. 277.

26) Ewin H. Sutherland and Donald R. Cressey, *Criminology*, 9th ed. 1974, p. 207~209.

27) 南興祐, 刑事政策, 3版, 1965, p. 177.

28) 金幸子, "缺損家庭이 少年犯罪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 제15권 2호 p. 68~70.

29) Sheldon and Eleanor Glueck, *Unravelling Juvenile Delinquenc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0, p.91.

30) Morris Ploscowe, *The truth about Divorce*, Hawthorn Books, 1955, p. 219~220.

이 사실은 少年非行 및 犯罪가 心理的 不安定에서 發生한다면 父母의 離婚에 의한 心理的 不安의 정도는 別居家庭의 葛藤에서 오는 긴장 만큼 크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前述한 바에 의하면 離婚·別居 등 家庭을 不安定하게 하는 離婚은 당사자 및 자녀는 물론 社會에 까지 至大한 影響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韓國과 日本의 離婚 傾向 比較

### (1) 離婚率의 比較

兩國의 離婚率을 比較하기 전에 離婚率의 算出方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離婚率 算出의 對象은 婚姻申告가 된 法律婚이 破綻되어 離婚申告를 마친 경우이다.

算出方法으로는 ① 離婚의 絕對數 ② 婚姻에 비례한 離婚數 ③ 人口에 비례한 離婚數의 세가지 방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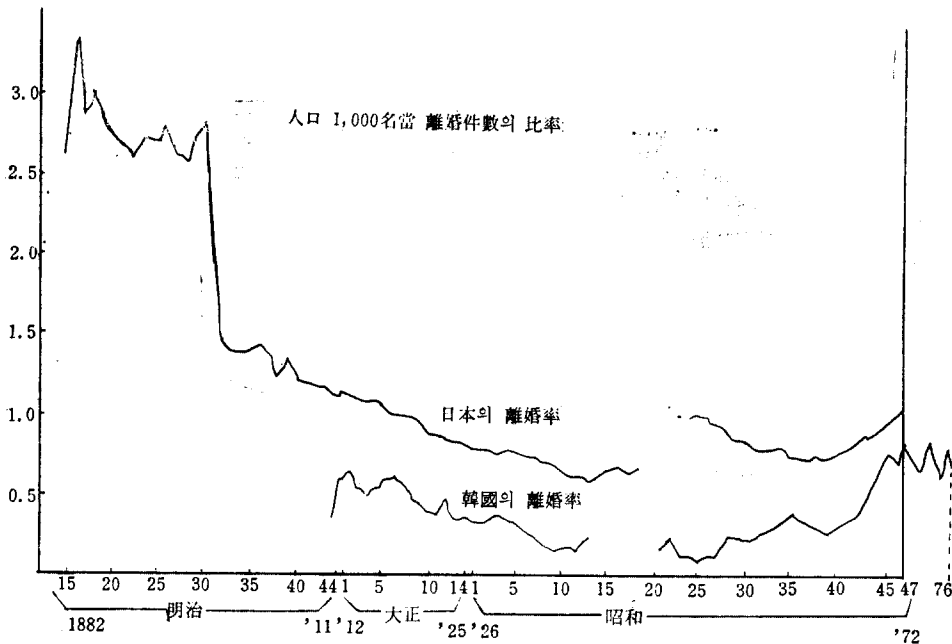
①의 경우 人口의 增加와 더불어 離婚件數도 增加할 것이므로 離婚의 絕對數만으로는 不충분하다.

②의 경우 婚姻한 人口數를 基準으로 얼마나 離婚하였는가를 밝히는 것이므로 合理的이고 原則的인 計算方法이다. 그러나 離婚하는 夫婦가 반드시 그 해에 婚姻한 夫婦가 아니므로 精確한 方法이 못된다.<sup>31)</sup>

그러므로 人口에 비례한 離婚數인 ③의 方法에 의한 통계자료를 채택하였다.

[그림 2]<sup>32)</sup>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969년 以前에서는 1912년~1918년의 離婚率이 가장 높은 時期였다. 즉 1912년에는 0.62로서 人口 10萬名中에서 62名이 離婚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1910年 韓·日合併과 함께 日本을 매개체로 西洋文明이 流入되어 우리나라의 傳統의 倫理思想에 의한 糟糠之妻에 대한 離婚禁止倫理觀이 흐려졌기 때문이다.

그 후 1937年까지는 점차 감소하였다.



[그림 2] 兩國의 離婚率

31) 李兌榮, 韓國의 離婚率 研究, 韓國家庭法律相談所, 1981, p. 7~8.

32) 湯澤雍彦, 圖說 家族問題, 昭和 51年, p. 177(日本의 離婚率 참조)

李兌榮, 韓國의 離婚率 研究, 1981.(韓國의 離婚率 참조)

1939年~1945年은 日政末期로 行政秩序가 確立되지 않아 離婚의 숫자가 集計되지 못해서 資料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946年~1948年의 離婚率은 低下되었는데 이것은 解放과 더불어 女性을 家계승의 수단으로 여기던 傳統的 婚姻觀이 퇴색되어 아들을 낳지 못해도 강제이혼 당하는 일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주는 말했다.

해방이후 6·25사변 까지 계속 낮아져 1951년에는 0.08 이던 離婚率이 다시 점차 증가하여 1961년에는 0.45 로急增하였다.

그 후 다시 감소하는 듯 하다가 1967年을 기점으로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 1974년에는 0.86 으로 歷史上 最高의 記錄을 보여주었다.

이상을 종합하면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67年~1976年의 10年間 平均 이혼율은 0.66 으로 1957年~1966年의 0.31 에 비하면 2倍 이상 增加했으며 1947年~1956年의 0.18 에 비하면 3倍 이상 增加한 것이다.

1968年 이후의 증가 추세는 女性의 社會的 地位向上과 이혼수속이 간편해진데도 原因이 있으며 앞으로는 社會적으로 특별한 變動이 없는 한 離婚은 增加할 것이라고 주는 보고했다.<sup>33)</sup>

日本은 明治 初期에 봉건제를 타파하고 親西歐 文明政策을 취하여 近代化하므로써 明治 16年(1883)에는 3.39(1898)로 통계상상 最高의 離婚率을 보였으며 明治 31年 까지는 계속 높았다. 그것은 結婚 및 離婚이 各地의 慣習에 맡겨져 비교적 자유로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思慮된다.

明治 32年(1898)에는 明治民法이 제정되어 離婚 原因이 有責의으로 묶이게 되므로 急降下하였다.

그 후 法制度를 바탕으로 社會思潮가 變化함에 따라 夫의 一方의인 강제이혼이 감소하여 昭和 13年(1938)에는 0.62 로 격감되었다.

<표 3> 平均이혼율

연 대	1947~1956	1957~1966	1967~1976
평균이혼율	0.18	0.31	0.66

33) 李兌榮, 前掲書, 1981, p.~17.

34) 光川晴之·四方壽雄·大橋薫, 前掲書, p. 148~149.

戰爭後 一時的으로 急增하고 1950年에는 1.01로 되었지만 그 후 다시로 격감되었다.

이렇게 離婚率이 低下된 이유는 國家가 가정제 관소를 통하여 國民의 離婚에 紹介한 때문이라고 思慮된다.

그러나 1970年代 부터 離婚件數는 다시 增加하여 明治 15年 때와 같아지고 있다.<sup>34)</sup>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60年 間의 離婚率은 어느 한 해도 우리나라가 日本보다 높지 않다. 그 이유는 兩國 모두 傳統的 儒敎思想의 倫理觀으로 지배되었으나 日本이 우리나라 보다 西歐文明을 빨리 흡수한 데에 그 原因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離婚率과 家庭破綻의 實數가 一致한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事實婚 關係의 破綻도 家庭破綻의 一例이지만 離婚率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까지 합친다면 이상의 離婚率보다도 실제의 家庭破綻의 比率은 높을 것이다.

## (2) 離婚의 要因 分析

우리나라와 日本의 離婚 要因의 比較 研究를 위한 資料는 우리나라의 경우 1979年度 家庭法院에서 法的으로 처리된 離婚 要因을 分析한 것으로 사법연감(1980)에 수록된 것을 참고로 하였다.

日本의 경우 昭和 53年(1978) 6月 1日~11月 30日의 6個月 間 調査한 것으로 조사대상자는 協議離婚한 日本人 夫婦이며 조사기관으로는 厚生省 官房統計情報部가 조사를 기획·실시·해석·집계·공표한 것이다.

또한 協議離婚한 日本人 夫婦와 비교하기 위하여 昭和 53年 8月 1日 우송법으로 하여 妻의 나이가 20세~44세인 日本人 夫婦 중에서 약  $\frac{6}{1,000}$ 을 무작위 抽出하였다.

離婚과 관련된 要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離婚 夫婦의 年齡 分布

우리나라와 日本 모두 夫婦의 연령은 離婚의 主要 要因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일반적으로 離婚은 젊은 연령층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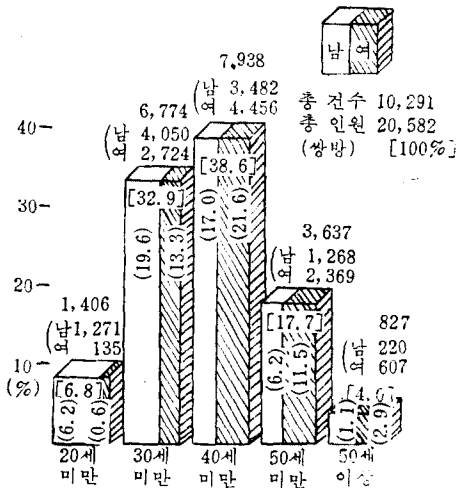


<표 4>

離婚夫婦의 年齡分布(日)

		總數	20歲未滿	20~24歲	25~29歲	30~34歲	35~39歲	40~44歲	45~49歲	50~54歲	55~59歲	60歲以上
남편	53年度離婚	100.0%	0.2	5.5	21.7	22.1	17.5	12.9	10.4	3.6	1.8	4.4
	53年1)人口動態	100.0	0.2	6.3	24.9	2.49	17.6	11.7	7.4	3.6	1.6	1.9
	53年度一般夫妻	100.0		2.0	13.9	20.6	20.6	25.3	24.4	11.9	2.0	0.1
妻	53年度離婚	100.0	0.9	11.7	30.5	21.4	15.9	9.2	6.1	1.6	2.1	0.8
	53年人口動態	100.0	0.9	13.9	30.6	21.7	11.5	9.0	5.1	2.4	1.0	0.8
	53年度一般夫妻	100.0	—	5.4	22.7	24.8	26.5	20.7	—	—	—	—

※ 昭和 53年「人口動態總計」離婚의年間確定數



※ 사법연감, 1980

[그림 3] 離婚夫婦의 年齡分布(韓)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는 30세~39세의 離婚率이 가장 높아 전체의 38.6%

20세~29세에는 32.9%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離婚은 30대 이내에 70% 이상 행해지고 있다.

<표 4>에서처럼 日本에서는 남편은 30세~34세 妻는 25세~29세에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위 사실에서 日本의 젊은 夫婦는 協議離婚을 대부분 利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② 離婚夫婦의 同居期間 分布

離婚夫婦의 同居期間은 兩國 모두 최근에 점차로 길어지고 있는 경향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70년에는 3년 이내 1975년에는 5년 이내 1975년에는 5년~10년 이내에 주로 離婚이 成立되었으므로 점차 오랜 기간동안 同居를 유지하는 現象이다. 그러나 法的 절차를 밟기 전에 別居期間을 갖는가에 관하여 알 수 없다는 점을 附言한다.

<표 6>에 의하면 日本에서도 5년~10년 사이에 25.1%로 가장 많이 行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 나라와 흡사하다.

<표 5>

離婚夫婦의 同居期間 分布(韓)

연도	기간	합계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5년 이내	10년 이내	10년초과
1970		3,316	470	586	738	582	449	491
		(100.0)	(14.0)	(17.7)	(22.3)	(17.6)	(13.6)	(14.8)
1975		5,943	469	933	1,260	1,651	1,134	496
		(100.0)	(7.9)	(15.7)	(21.2)	(27.8)	(19.1)	(8.3)
1979		10,291	807	1,478	1,987	2,549	2,499	971
		(100.0)	(7.8)	(14.4)	(19.3)	(24.8)	(24.3)	(9.4)

※ 사법연감, 1980.

<표 6> 離婚夫婦의 同居期間 分布(日)

	總數	3個月未滿	3~6個月未滿	6~1年	1~2年	2~3年	3~5年	5~10年	10~15年	15~20年	20年以上
53年度離婚夫妻	100.0%	3.3	3.8	5.1	9.7	7.5	12.6	25.1	15.4	8.8	8.2
53年 1)人口動態	100.0	—	10.1	—	8.7	8.2	15.1	26.9	15.8	8.5	6.6
53年度一般夫妻	100.0	0.3	1.4	2.5	4.8	5.6	10.4	27.2	24.9	18.5	4.4

※ 昭和 53年 「協議離婚의 實態」(厚生省)

<표 7> 離婚夫婦의 職業 分布(韓)

구분	직업	합계	농어업	노무자	종업원	상업	군인	회사원	교육자	공무원	자유업	무직	기타
청구인	남	5,348 (100.0)	711 (13.3)	551 (10.3)	432 (8.1)	867 (16.3)	69 (1.3)	676 (12.6)	91 (1.7)	102 (1.9)	492 (9.2)	826 (15.4)	531 (9.9)
	여	4,943 (100.0)	399 (8.1)	234 (4.7)	432 (8.7)	571 (11.5)	2 (-)	182 (3.7)	38 (0.8)	39 (0.8)	345 (7.0)	2,451 (49.6)	250 (5.1)
피청구인	남	4,943 (100.0)	534 (10.8)	497 (10.1)	451 (9.1)	805 (16.2)	35 (0.7)	772 (15.6)	60 (1.2)	81 (1.7)	469 (9.5)	861 (17.4)	378 (7.7)
	여	5,348 (100.0)	371 (6.9)	183 (3.4)	386 (7.2)	570 (10.7)	5 (0.1)	169 (3.2)	38 (0.7)	27 (0.5)	388 (7.3)	2,788 (52.1)	423 (7.9)

※ 사법연감. 1980

우리나라와 日本의 同居期間에 따른 離婚 傾向을 比較하여 보면 1975年度 Seglem과 Hayes의 研究<sup>35)</sup>에서 初婚의 경우 3年 이내에 離婚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들은 이러한 現象에 대해 初婚이 정신적으로 未成熟한 20세 전후의 早婚이었다는 점과 結婚이 婚前 妊娠의 압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으로 관련지어 설명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儒敎思想이 지배적인 우리나라와 日本에서는 아직까지 婚前妊娠에 관하여 부정적인 觀念을 가지고 있어 이로 인한 結婚이 美國만큼 行하여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早期離婚보다는 5年 이상의 同居期間을 가진 후 離婚하는 것으로 解析할 수 있다.

더우기 美國의 경우 早婚이 早期離婚으로 끝나는 이유는 강한 愛情主義가 生活의 평온한 지속을 곤란하게 하며 젊은 세대의 離婚에 대한 價値觀이 긍정적으로 變化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③ 離婚夫婦의 職業 分布

職業에 따른 離婚의 傾向은 우리나라에서는 상업 회사원에, 日本에서는 事務關係 販賣서비스·關

<표 8> 離婚한 男便의 職業分布(日)

	職 業	總數(20~44歲)
離婚	總 數	100.0%
	農林·漁業關係職業	4.7
	販賣·서비스關係職業	28.8
	事務關係職業	30.9
※ 勞動力調查	總 數	100.0%
	農林·漁業關係職業	4.9
	販賣·서비스關係職業	23.3
	事務關係職業	23.9
	生産·運輸關係職業	35.7
	總 數	100.0%
	農林·漁業關係職業	4.9
	販賣·서비스關係職業	23.3
	事務關係職業	23.9
	生産·運輸關係職業	47.9

※ 昭和 53年 「勞動力調查年報」(總理局統計局)

係職業에 많이 分布되어 있다.

<표7>에서 우리나라 離婚事件의 職業分布를 보면 청구인이나 피청구인 모두 상업 회사원 농어업

35) Betty S. Seglem and Maggie P. Hayes, "Reasons for Early Divorce", 19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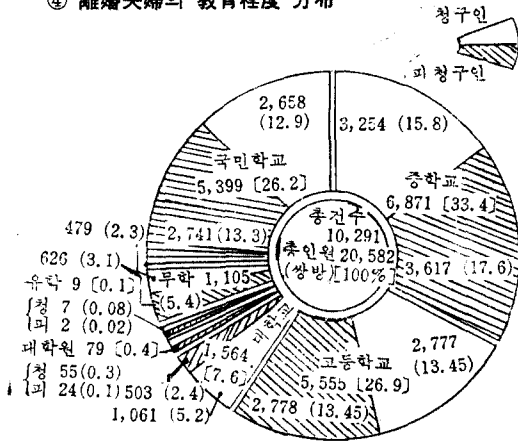
의 順이다. 위 표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피청구인의 경우 남편의 無職은 가장 높은 率이고 청구인으로도 2位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軍인 敎育자 공무원은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들에게 經濟的 需要함은 없어도 安定된 生活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思慮된다.

위 사실에서 經濟問題와 生活의 安定은 家庭生活에서 필수적인 要素임을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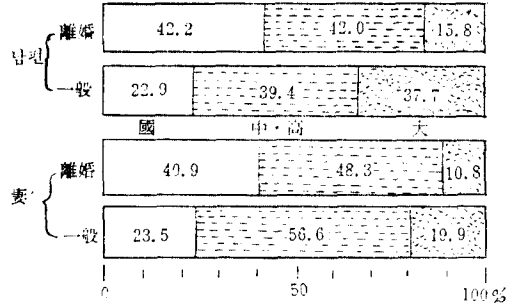
〈표 8〉은 日本의 離婚夫婦 가운데 남편의 職業에 관한 것으로 總人口의 職業分布와 比較해 볼 때 事務關係 販賣·서비스關係 職業이 높은 비율로 分布 되어 있다. 이것은 商會 회사원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흡사하나 두 조사 的 職業의 分類方法이 다르므로 그 結果의 신뢰도는 비교적 낮게 解析되어야 한다고 思慮된다.

④ 離婚夫婦의 敎育程度 分布



※ 사법연감, 1980

〔그림 4〕 離婚夫婦의 敎育程度 分布(韓)



※ 昭和 53年「協議離婚의 實態」(厚生省)

〔그림 5〕 離婚夫婦의 敎育程度 分布(日)

離婚과 離婚夫婦의 敎育程度를 보면 우리나라 離婚夫婦의 敎育程度는 [그림 4]에서 처럼 中卒 高卒 國卒의 順인데 國卒의 比率이 적은 것은 이들 女性의 경우 經濟能力이 부족하므로 남편에게 순종하며 묵묵히 살아가기 때문에 思慮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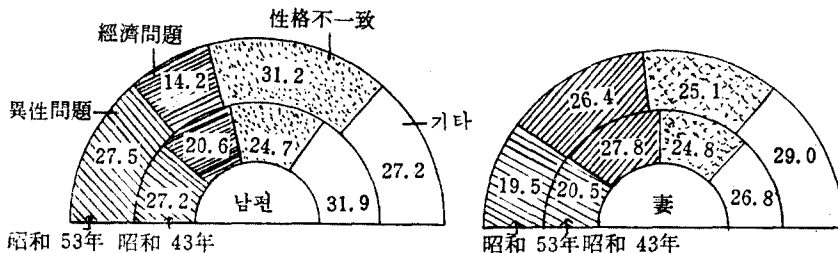
日本의 경우 離婚한 남편과 妻 모두 國卒이 40% 이상으로 一般夫婦의 比較하여 볼 때 敎育水準이 훨씬 낮음을 발견할 수 있다.

위 사실에서 離婚은 대체로 낮은 敎育水準에서 行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離婚事由 分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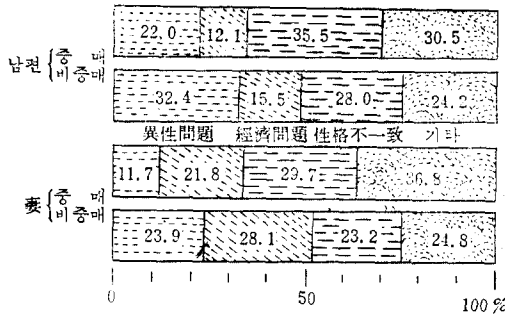
離婚의 主된 이유를 보면 남편의 경우는 「性格不一致」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異性問題」를 들고 있다. 妻는 「經濟問題」「性格不一致」의 順이다.

이것은 昭和 43年과 같은 현상이나 昭和 53년에는 남편 妻 모두에게 性格에 관한 問題가 좀더 대두되고 있다. 즉 非道德的 態度나 心理的 葛藤은 離婚의 主된 要因이 되며 이는 現代 夫婦關係에



※ 昭和 53年「協議離婚의 實態」(厚生省)

〔그림 6〕 離婚事由 分布(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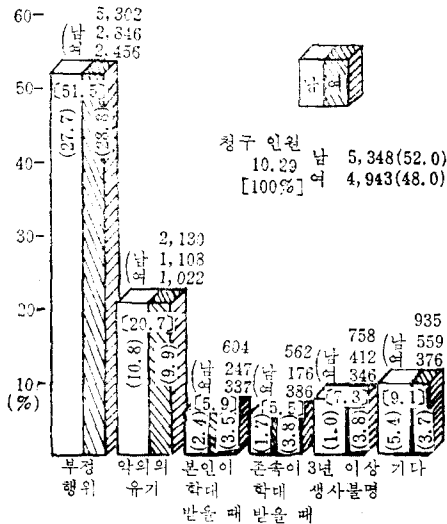


※ 昭和 53年 「協議離婚의 實態」 (厚生省)  
 [그림 7] 結婚形態로 본 離婚事由 分布(日)

서 心理的·情緒的 安定的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結婚의 形態면에서 보면 「중매」에 비하여 「비중매」일 경우에 배우자의 異性問題로 인한 離婚比率가 많다는 점이 주목된다.

우리나라에서의 離婚事由는 <그림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男·女 모두 배우자의 異性問題 즉 「不貞行爲」에 의한 경우가 51.5%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악의의 유기, 3年以上 生死不明 등이다.



주: 이혼사건중 원인경합의 경우는 주된 1개만 개정함.

※ 사법연감, 1980

[그림 8] 離婚事由 分布(韓)

그러나 夫婦의 結婚生活은 복잡적으로 構成되므로 어느 한가지 要因만으로 보다는 대체로 여러가지 要因이 혼합되어 離婚에 이르게 된다고 考慮된다.

### III. 結 論

本 研究는 現代의 多樣한 家族問題들 가운데 해마다 그 比率가 높아가고 있으며 당사자와 子女 및 社會의 安定性을 위협하는 離婚問題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日本의 실제적 통계자료를 통하여 離婚率 및 離婚과 관련된 要因 등 離婚의 傾向을 比較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韓·日合併을 기점으로 1910年代에 「男女同權」「一夫一妻制」「蓄妾廢止」「離婚同權」 등이 주장되었으나, 日本에서는 이미 1880年代에 주장된 점 뿐만 아니라 家族法을 포함한 民法制度의 時期면에서도 日本은 우리나라보다 약 25年 앞섰다.

現代化 過程이 離婚에 영향을 주는 要因으로는 價値觀의 變化, 女性의 經濟的 自立, 家族形態의 核家族化, 女性의 高等教育으로 인한 社會的 地位向上 등이 있으며 기타 갑작스런 經濟的 變化, 戰爭, 배우자의 法的 地位 變化 및 婚前 상대방에 대한 認識 결여를 들었다.

離婚은 당사자의 愛情的·情緒的 問題, 社會的·經濟的 問題, 子女養育 및 그들의 心理的 問題 등 家庭 뿐 아니라 社會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世界的인 推移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日本에서도 離婚率은 增加 現象을 보이고 있다.

1912년부터 1972년까지 약 60年間的 離婚率에 있어 우리나라는 日本보다 어느 한해도 높지 않았다. 이 사실은 兩國 모두 傳統의 儒敎思想의 倫理觀으로 지배되었으나 日本이 우리나라보다 西歐文明을 빨리 흡수한데 그 原因이 있다고 본다.

離婚과 관련된 要因을 分析하면 離婚夫婦의 연령은 離婚의 주된 要因으로 兩國 모두 30代 이내의 젊은 부부에게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離婚夫婦의 同居期間은 兩國 모두 美國에 비하여 길었으며 최근 점차 길어지고 있는 傾向이다.

職業에 따른 離婚의 傾向은 우리나라에서는 商業 회사원 日本에서는 事務關係 販賣·서비스關係 職業에 많이 分布되어 있으며 특히 남편의 職業이 없는 경우에 청구인·피청구인 모두 높은 비율을 보인 것으로 經濟問題는 離婚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離婚夫婦의 教育程度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中卒 高卒 國卒의 順이고, 日本에서는 國卒이 40%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낮은 교육수준에서 많이 離婚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日本에서 離婚의 실질적 이유로는 남편과 妻에게 약간 차이가 있는데 남편은 「性格不一致」가 가장 많고 妻는 「經濟問題」다음으로 「性格不一致」를 들고 있다. 이것은 10年前과 같은 현상이나 現代社會에서 心理的·情緒的 適應이 夫婦關係에서 더욱 중요시 되어지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한편 結婚의 形態와 離婚과의 關係를 考察하면 「비중매」夫婦의 경우 배우자의 「異性問題」로 인한 離婚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배우자의 異性問題 즉 「不貞行爲」에 의한 離婚이 가장 많이 發生하였다.

이상의 結果를 종합하여 볼 때 現代社會에서 불가피한 必要惡의 存在인 離婚問題를 解決하기 위하여는

1. 經驗을 中心으로 한 종래의 상담방법에서 벗어나 科學化 專門化된 민간 상담기관이 많이 설치되어 離婚等 家族問題 解決을 위하여 모색되어야겠다. 더우기 상담을 의뢰하는 來談者는 解決이 가능한 時期 즉 問題의 初期에 상담기관을 찾아야겠다.

2. 離婚問題에 관하여는 社會問題로서 심각히 언급되고 있으나 특히 우리나라에서 研究에 進展이 없는 것은 離婚後의 女性이나 離婚家庭子女의 추적이 곤란하므로 그들의 社會的·經濟的·心理的 問題에 관한 研究가 미흡하기 때문으로 思慮된다. 따라서 家庭法院 當局이 그들을 對象으로 하여 多角的인 方法으로 調査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家族問題 研究家들이 分析 研究하므로써 離婚率의 低下 方案 등 離婚問題 解決을 위한 研究가 있어야겠다.

참 고 문 헌

1. 金箕斗, 韓國少年犯罪研究, 1970.
2. 金斗憲, 朝鮮家族制度研究.
3. 金聖培, 刑事政策學, 1974.
4. 金容漢, 親族相續法, 博英社, 1973.
5. 金疇洙, 家族關係學, 進明文化社, 1975.
6. 金幸子, “缺損家庭이 少年犯罪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 15권 2호
7. 南興祐, 刑事政策, 3版, 1965.
8. 상담사건통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980.
9. 劉永珠, 家族關係學, 修學社, 1976.
10. 李兌榮, 韓國의 離婚率 研究,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981.
11. 李兌榮, 韓國離婚研究, 梨花女子大學校 出版部, 박사학위논문, 1966.
12. 光川晴之·四方爲雄·大橋薰, 家族病理學, 有斐閣雙書, 昭和 50年.
13. 湯澤雍彦, 圖說 家族問題, 日本放送出版協會, 昭和 51年.
14. 湯澤雍彦, 新版 家族關係學, 光生館, 昭和 54年.
15. Chester, Robert, “Sex Difference in Divorce Behavior”, *Journal of Biosocial Science* 2(Appendix)
16. Chester, Robert and Jane Streather, “Society at work; Taking stock of Divorce”, *New society* 18(July)
17. Goode W.J., *The Family*, Prentice-Hall, The Dorsey Press, 1975.
18. Gunter B.G., “Notes on Divorce Family as Role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Feb. 1977.
19. Nye F.I. “Mantal Interaction in Nye and Hoffman”, *The Employed Mother in America*, Chicago Rand McNally, 1966.
20. Morris Ploscowe, *The Truth about Divorce*, Hawthorn Books, 1955.
21. Morris Rosenberg, “The Brocken Family and Self-Esteem”, Reiss, *Readings on the*

- Family System*,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65.
22. Seglem B.S. and Hayes M.P., "Reasons for Early Divorce", 1975.
23. Shaw and Machay, *Social Factors in Juvenile Delinquency*.
24. Sheldon and Eleanor Glueck, *Unraveling Juvenile Delinquency*, 1950.
25. Sutherland E.H. and Cressy D.R., *Criminology*, 9th ed. 1974.
26. Williamson R.C. *Marriage and Family Relationships*, Wiley.